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0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이 용·안병길·태영호

윤재옥 • 양금희 • 서정숙

조수진 · 김승수 · 유의동

조경태 · 김석기 · 박성중

김상훈 · 정진석 · 윤한홍

성일종 · 김태흠 · 김도읍

신워식 · 주호영 · 박덕흠

권명호 · 이주환 · 김예지

이종배 · 추경호 · 김정재

지성호 • 구자근 • 권성동

최승재 · 서일준 · 유경준

배준영 · 최춘식 · 한무경

홍문표 · 정동만 의원

(38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 정책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선수의 보호 육성,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 대부분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혹독 한 훈련과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은퇴 이후의 준비나 대책은 전무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체육인의 복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안 제14조 및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의안번호 제2100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의2. 「체육인 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운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했 혅 개 정 아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삭 제〉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 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5)·(6)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삭 제> 보상) ① 국가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 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 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 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 정한다.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에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인정및 대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2. 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

<u>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u>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 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략)

<u>6</u>.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제22소(기금의 사용 등) ①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체육인 복지법」 제15
조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
관의 운영
5. (현행과 같음)
<삭 제>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	---	----	------	----

7.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